

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☐ 제안이유

- 현행 수질검사 결과의 광고금지등 제한규정이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규제 조항으로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삭제하고
- 보건소내 입원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입원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- 수질검사 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조항 삭제(안제10조)
- 수질검사 성적원본의 말소조항 삭제(안제11조)
-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조항 삭제(안제15조)
- 먹는물 수질검사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 서식변경(안 별지 제3호 내지 제5호 서식)

☐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중 제10조의 수질검사 결과의 광고등 금지조치 및 제11조의 성적원본의 말소 조항은 상위법령인 먹는물 관리법 제31조(광고의제한), 동법시행령 제14조(광고의제한)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

- 별지 서식변경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
- 안제15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조항은 보건소에 입원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입원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
-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상위법령인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 규칙이 1998년 2월 28일 개정되었음에도 1년여가 지나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향후에는 상위법령의 개정 즉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